

#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英文名: Kyung Hee University Alumni)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②장학사업 및 후배 지원을 위한 사업
- ③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 ④학술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 ⑤기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정회원

- 1. 모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전문부를 졸업한 사람
- 2.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모교 특수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 연구과정 또는 6개월 이상의 최고위 과정 등을 수료한 사람
- 4. 간호전문대학, 호텔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5. 모교를 중퇴하고 명예학위를 받은 사람
- 6. 모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본회 및 산하조직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②준회원

- 1. 모교 및 모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에 재학하였던 사람
- 2. 모교 특수대학원에서 6개월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③명예회원

- 1. 모교 교무위원 및 모교 법인의 임원으로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 2.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명예회장 : 3인 이내
- ②고문 : 10인 내외
- ③자문위원 : 100인 내외
- ④회장 : 1인
- ⑤수석부회장:3인 이내
- ⑥부회장 : 150인 내외

- ⑦사무총장 : 1인
- ⑧분과위원 : 70인 내외
- ⑨이사 : 2,000인 내외
- ⑩감사 : 2인
- ⑪사무처장 : 1인

####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사무처장은 임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①회장 :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부회장 :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 한다.
- ③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이사 : 이사는 각 단과대학(원) 동문회장 및 지부.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단과대학(원) 및 학과, 기별 동문회와 직장별, 직능별, 지역별 지회 회장 등 단위 동문회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 ⑤위촉직 이사 : 회장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⑥감사 :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⑦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⑧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과 상임분과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입학선배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대의원을 겸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④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한다.
- ⑤사무처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11조(임원의 의무)

- ①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 ②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 제12조(감사)

- ①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회장)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 ①모교 설립 당시의 총장
- ②재임 기간중의 모교 총장
- ③본회 직전 회장

#### 제14조(고문) 본회에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둔다.

- ①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발전에 공헌한 동문 및 모교 교수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고문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제15조(자문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둔다.

- ①자문위원은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급 동문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고문과 함께 최고자문기구로 본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회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장 회의 및 기구

### 제16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

1.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감사
3. 상임이사, 이사

③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대의원 10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칙 개정안은 대의원 10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 승인
-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③ 결산 보고

④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
3. 이사회에 상정할 예산 및 결산안
4. 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5.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
6. 고문, 자문위원, 이사의 위촉 동의
7.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
8. 포상 및 징계
9. 지부, 지회 조직의 승인 및 지원
10. 회칙,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10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본회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3.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6. 회칙개정안의 심의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1조(분과위원회)

- ① 본회에 여성, 발전, 조직, 기획, 장학, 교육, 국제, 경영회계, 금융, 문화예술관광, 법조, 보건복지, 산업, 체육, 홍보,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발전분과위원회 : 본회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3. 조직분과위원회 : 본회 조직 강화 사업 및 지부, 지회, 직능별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획분과위원회 : 본회 발전을 위한 연차계획 및 각종 행사와 관련되는 기획 조정
  - 5. 장학분과위원회 : 장학기금의 모금, 운영과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 6.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국제분과위원회 : 해외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경영회계분과위원회 : 경영회계분야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금융분과위원회 :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문화예술관광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법조분과위원회 : 법조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보건복지분과위원회 : 의료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산업분과위원회 : 산업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체육분과위원회 : 체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5. 홍보분과위원회 : 본회 홍보와 언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특별분과위원회 : 모교발전 및 총동문회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

### 제22조(확대 회장단회의)

- ① 본회의 중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확대 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 2.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 3. 분과위원
  - 4. 단과대학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 동문회장
  - 5. 지부·지회 및 학과별, 직장별, 직능별 동문회장
  - 6. 여성동문회 회장
- ② 확대회장단 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경희인의 밤”행사 등 특별 행사를 위한 사업계획의 협의
  - 2. 사업 집행을 위한 모금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조 직

### 제23조(조직) 본회 산하에 각 단과대학동문회, 각급 대학원동문회, 여성동문회, 각 시·도 지부·지회, 해외 지부·지회 및 학과별, 직장별, 모임별 지회를 둔다.

### 제24조(지부, 지회)

- ① 지부는 광역시와 각 도 단위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 단위별로 설치한다.
- ② 지회는 광역시와 각 도 단위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 단위 이하의 지역 및 직장별 모임별로 설치한다.
- ③ 지부, 지회는 결성 즉시 본회에 회적, 회원 명단과, 사업계획서 등을 본회에 보고하고 제반 사업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지부, 지회는 회원의 변동과 임원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사무처

### 제25조(사무처)

- ①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장 재정

### 제26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총당한다.

- ①연회비, 평생회비
- ②회장단 및 이사 분담금
- ③입회비
- ④협찬금
- ⑤기타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당해년도의 수지 결산 결과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상벌

제29조(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상벌 규정)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 제9장 부칙

제32조(시행)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일반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 제34조(경과규정)

- ①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개정 회칙 이전의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 회장의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임은 회칙개정 이전의 임기를 포함한다.

제35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 10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할 수 있다.

1955년 4월 제정  
1967년 6월 개정  
1976년 4월 개정  
1978년 12월 개정  
1986년 4월 개정  
1987년 5월 개정  
1988년 5월 개정

1990년 7월 개정  
1992년 5월 개정  
1994년 7월 개정  
1996년 5월 21일 개정  
2005년 4월 28일 개정  
2010년 4월 22일 개정